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안내문과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선정하며,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 단지명 :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 사업주체 : 동양아파트인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업체 :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0층 10개동 총 654세대 중 일반분양 341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9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형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총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39	39A	39.9170	12.3034	52.2204	28.7442	80.9646	17	1
	39B	39.9170	12.3034	52.2204	28.7442	80.9646	17	2
59	59A	59.9263	18.4568	78.3831	43.1529	121.5360	131	13
84	84A	84.9899	24.8249	109.8148	61.2013	171.0161	34	3
	84B	84.9902	24.9804	109.9706	61.2015	171.1721	78	8
	84C	84.9732	25.9976	110.9708	61.1892	172.1600	27	3
121	121	121.9577	33.9717	155.9294	87.8218	243.7512	37	-
합계							341	30

※ 해당 주택형, 타입, 세대수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택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합계
39A	1 (5)	-	-	-	-	1 (5)
39B	1 (5)	-	-	-	1 (5)	2 (10)
59A	4 (20)	1 (5)	1 (5)	3 (15)	4 (20)	13 (65)
84A	1 (5)	-	-	1 (5)	1 (5)	3 (15)
84B	2 (10)	1 (5)	1 (5)	2 (10)	2 (10)	8 (40)
84C	1 (5)	-	-	1 (5)	1 (5)	3 (15)

※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입니다.

분양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04.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홈페이지(골드클래스시그니처.com)
건본주택 개관	2026.04.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0-11
특별공급 접수	2026.04.2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건본주택 방문접수(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6.04.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 조회 가능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 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모집공고 확인)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장애인	전북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근로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전주시 및 전라북도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 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견본주택(☎063-251-3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